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 1458

제출연월일: 2020. 5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(2020. 5. 기준, 단위: 천 원)

수				이				ス]				혼			
항 별	목	당	초	변	경	증	감	항	목	당	초	변	경	증	감
전입금		100,000		0		0		비융자성 사업비		0		90,000		90,000	
								기본경비		0		1,500		1,500	
								예?	치금	100),000	8	3,500	△91	1,500

2) 주요 변경내용

- O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(비융자성 사업) 90,000천 원 추가
- O 운용 및 관리 경비(기본경비) 1,500천 원 추가

- 3)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계획
 - O 대 상: 성동구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·단체 등
 - O 추진방법
 - 위탁사업자(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) 공모 등
 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추진
 - 지원규모: 90,000천 원(연간 지원 총금액)
 - O 추진일정
 - 사업추진: 2020. 7.
 -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심의: 2020. 7.
 - 사업비 교부: 2020. 8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O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O「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용도)

< 관 런 법 령 >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- 2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